

#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81 |
|----------|------|

2021.6.17.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. 5. 25. 서울특별시장 제출
- 회부일자 : 2021. 5. 31.
- 상정 및 의결일자
  -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1.6.17. 상정·의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동구 도시공간개선단장 직무대리)

### 1. 제안이유

-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하여,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명시함(안 제16조)

- 위원회의 명칭 변경:

(현행) “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” → (개정) “전시관 운영위원회”

- 위원회의 심의·자문 대상에 “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함(안 제16조제3호)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, 서울도시건축전시관(이하, 전시관) ‘운영자문위원회’를 ‘운영위원회’로 하고 자문·심의대상에 ‘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’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려는 것임.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<u>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 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| 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<br>----- <u>대하여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</u> -----<br>-----. |
| 1.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| 1.·2. (현행과 같음)   |
| 2.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 |  |
| <신 설>   | 3. <u>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</u>  |
| 3.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|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 |

- 작년 서울마루의 첩성대 전시 논란에 대응하여<sup>1)</sup> 위원회의 자문·심의대상에 외부공간 활용을 명확히 하고, 더불어,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전시관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전시관의 주요 사안들이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,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 방침으로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전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.
-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(검토보고서 붙임1) 이 조례에 심의기능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심의기능을 수행해 왔고, 이 개정조례안에서 자문·심의대상으로 추가한 ‘외부공간 활용계획’은 이 조례 제16조제1호에(주요 사업계획) 포함될 수 있으므로,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변동사항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※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안(자료: 도시공간개선단)

| 심의사항  | 자문사항 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전시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업별(전시, 프로그램) 총사업비의 20% 이상 증감</li> <li>2. 사업별(전시, 프로그램) 개시일의 30일 이상의 변경</li> <li>3. 사업별 전시장소의 변경</li> </ol> </li> <li>● 전시관의 대관 및 이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● 그 밖에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ul> |

1)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극복 격려를 위해 서울마루에 첩성대를 전시하였으나,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전시물 설치에서 철거까지 작가와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첩성대 설치·철거로 인한 외부공간 훼손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일련의 문제들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, 첩성대 전시 기획은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(‘19년 말 제4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‘20년 기획전시의 하나로 자문 안전에 포함되었으나 해당 의견 제시는 없었음)

- 정리하면, 이 개정조례안은 전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, 이 개정 규정 외에도 조례 전반적으로 운영자문위원회 인용규정 등이 있으므로(검토보고서 붙임2), 관련된 규정들을 ‘운영자문위원회 자문’에서 ‘운영위원회 심의·자문’으로 함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한편, 작년 첨성대 전시와 같은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기능 강화 뿐 아니라, 전시 기획에서 작가 선정, 작품 설치 및 철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, 시민들의 시대적 정서와 여론을 이해하고 전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.
- 또한, 우리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와 같이, 전시관이 건축 분야나 일부 단체 등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계획·주택·환경 등 유관 분야 및 일반 수요자들이 활용하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·건축 공공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시 및 프로그램의 폭 그리고 대관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고, 특히, 올해는 제3회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만큼, 관련 행사들과 시너지효과를 높여 전시관과 비엔날레 각각 서울시 도시·건축의 대표적인 시설 및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.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381 |
|----------|------|

제안일자 : 2021. 6. 17.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위원회 인용 규정 등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수정함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위원회 인용 규정에서 ‘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’을 ‘운영위원회의 심의’로 변경하고(안 제8조제3항, 제12조),
- 위원 참여 제한 규정에서 ‘자문’을 ‘심의·자문’으로 하며(안 제19조제4항),
- 안 부칙에서 조문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함(안 부칙).

#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 중 “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한다.

안 제12조 중 “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한다.

안 제19조제4항 중 “자문대상 안전”을 “회의 안전”으로, “자문”을 “심의·자문”으로 한다.

안 부칙은 조문번호와 조제목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 수 정 안  |
|--|--|--|
| <p>제8조(이용료) ① ~ ②<br/>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의 성격·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<u>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</u> 거쳐 정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| <p>제8조(이용료) ① ~ ②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제8조(이용료) ① ~ ②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운영위원회의 심의를</u> -----<br/>-----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2조(대관료 감면)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<u>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</u>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2조(대관료 감면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| <p>제12조(대관료 감면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운영위원회의 심의를</u> -----<br/>-----.</p>   |
| <p>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<u>대한 자문을</u> 구하기 위하여</p>  | <p>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<br/>----- <u>대하여</u> 심의·자문하기 위</p>   | <p>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(개정안과 같음)</p>  |



|   |  |   |
|---|--|---|
| <p><u>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</u><br/>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    | <p><u>한 전시관 운영위원회</u>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   |
| <p>1.· 2. (생략)</p>  | <p>1.· 2.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| <p><u>3.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</u></p>                 |   |
| <p>3. (생략)</p>  |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제19조(회의) ① ~ ③<br/>(생략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9조(회의) ① ~ ③<br/>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9조(회의) ① ~ ③<br/>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④ 위원이 <u>자문대상 안건</u>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<u>자문</u>에 참여할 수 없다.</p> | <p>④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         | <p>④ ----- <u>회의 안건</u>-----<br/>----- <u>심의·자문</u>-----<br/>-----.</p> |
| <p>부칙</p>   | <p>부칙</p>  | <p>부칙</p>   |
|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      | <p>이 조례는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”을 “운영위원회의 심의를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”를 “대하여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

제19조제4항 중 “자문대상 안건”을 “회의 안건”으로, “자문”을 “심의·

자문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8조(이용료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, 공연, 행사 등의 성격·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<u>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</u>을 거쳐 정한다.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 <p>제12조(대관료 감면) 시장이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 <u>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</u> 거쳐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<u>대한 자문을</u> 구하기 위하여 <u>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| <p>제8조(이용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 <u>운영위원회의 심의</u>를 -----.</p>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대관료 감면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운영위원회의 심의를</u> -----<br/>-----.</p> <p>제1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-----<br/>-- <u>대하여 심의·자문하기 위한 전시관 운영위원회</u>-----<br/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|

<신 설>

3. (생 략)

제19조(회의) ① ~ ③ (생 략)

④ 위원이 자문대상 안전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3. 서울마루 등 외부공간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

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19조(회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회의 안전-----  
----- 심의·자문-----  
-----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